



조달청, “무자격 제조업체 시장진입 막는다”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입찰참가자격등록단계부터 사전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하였다고 3월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의 등록이 쉬웠다.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20개 제조업체의 15,297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한 결과, 36.6%(5,444개 품명)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을 취소함

- 부적합 사유로는 생산중단 47.4%, 제조기준(설비·인력 등) 미달 16.8%, 휴·폐업 13.3%, 공장없음 등 9.6%로 나타남

이번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인력 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을 허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취소’토록 하는 벌칙을 신설하였다.

* 등록이 취소된 부적합 품명 중 연간 4~7%가 재등록하고 있음

한편, 3년마다 이루어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인 경우, 갱신등록 시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조달청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팀 (070-4056-8062)